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##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

수신자 회원제위

제목 **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안내**

---

1.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( '23.4.18 개정, ' 23.10.19 시행) 및 하위법령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 '23.5.9) ·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( ' 23.5.3) 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<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 내용 >

- ① 건설업 양도, 합병 또는 상속시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(법 제17조)

### <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 내용 >

- ① 기존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개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함(시행령 제16조)
- ②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(시행령 별표2)
- ③ 불법하도급 등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(시행령 별표6)
- ④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토록 함(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)
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각 1부. 끝.

##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(직인생략)

대리 박상범 과장 이상옥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 
감사

시행 : 대전광역시회-430 (2023.5.15.)

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, 601호(월평동, 미래빌딩) /<http://home.cak.or.kr/city/daejun/>

전화 042-486-0881/4 전송 042-486-0885 /E-mail : cak25@cak.or.kr /공개